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7일 근무 1일 휴무(여기서 휴무는 아마도 휴일과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임)가 일률적으로 반복되어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Q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A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A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정지된 기간은 위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주휴·월차휴가·연차휴가의 성질을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9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Q 저는 甲·乙·丙의 공동소유인 토지 지상에 乙·丙의 동의를 얻어 甲이 신축한 점포건물을 임차하여 생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丙이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토지의 분할이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주위에서는 위 토지가 경락되는 경우 경락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도 甲은 자기가 乙·丙의 동의를 얻어 위 건물

을 건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건물이 철거된다면 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甲의 주장이 맞는지요?

A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66조). 그런데 관례는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분반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것은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87.7.23. 86다카2188).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만일 위 토지가 경락된다면 甲은 경락인의 철거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따금 질에서 방귀가 나온답니다. 특히 썩스 할 때 이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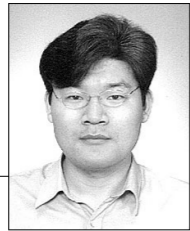
A 어느 정도의 여성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내에 공기가 갇혀 있다가 난감한 소리로 방출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산부인과 검진 때 질의 상단이 하단을 향하여 함몰되어 있는지 혹은 자궁탈출 등의 징후가 있는지 물어 보라.

어떤 의사는 방귀 문제를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의 이완의 초기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 소리를 건장한 성격 반응으로 보고 안심해도 된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질 외 부분(자궁경부에 가까운 안쪽 말단)이 열리거나 입을 벌려 남성이 강하게 누를 때 공기가 밀려나오면서 내는 소리다. 의사들은 환자가 이러한 난처한 문제를 호소할 때 안심하면서 유머로 넘기고, 그리고 소리가 계속 나서 난처하면 음악을 틀라고 권유한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장 **김종명**



조류인플루엔자(AI)란?

조류인플루엔자란 쉽게 얘기하면 조류, 즉 새들에게 걸리는 독감(인플루엔자)이다. 새들에게 주로 감염을 시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아형은 H5N1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촌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은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인체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은 또한 아주 치명적이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75명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며 그중 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년 간격으로 대유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행시마다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질병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년 가을이면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이 되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사람의 인플루엔자와 전염방식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들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불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새들에게 걸리는 독감이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지역은 아니다. 이미 2003년 양계장에서 닭들이 집단폐사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이 확인이 되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내에서의 인체감염사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야생조류인 철새들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방이나 치료방법은 있는 걸까? 치료약은 존재한다. 사람의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타미플루(삼품명)라는 약이 조류인플루엔자에도 증상완화와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치료약을 약 70만명 분 정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몇몇 국가에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예방백신의 효과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한 하였으나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유전자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이 매우 치명적이긴 하나 다행히도 조류에서 사람으로의 전파가 쉽사리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안심하는이 이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점이 주목하고 있다. 만일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 새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가 이루어지고 더욱이 사람간의 전파도 용이하게 되는 유전자를 획득하게 된다면 단순히 윌드크 경기의 취소를 넘어 전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조류인플루엔자 앞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이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0)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Q 냉장고를 220V로 사용하면 전기가 절약된다는데 사실입니까?

A 전기제품을 220V로 사용하면 110V로 사용할 때 보다 전기 사용량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면, 겸용냉장고를 220V에 사용하면 연간 36~72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경우 용량에 따라 절감되는 전력량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냉장고용량(리터) and 절감전력량(연간). Rows include 220-250, 251-350, 36-48kWh, 48-72kWh.

Q 소음이 크게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A 냉장고에서 소음이 크게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속의 모터가 불량일 경우, 모터 부차용 나사가 꼭 조여지지 않아 헐거워졌을 경우, 그리고 냉장고 지지용 다리가 바닥면에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냉장고 제조업체의 애프터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TV, 냉장고 등 한달의 전기사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A 가전기기별 월간 전기사용량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기기명, 용량(W), 사용시간, 전력량(kWh). Lists various appliances like TV, refrigerator, etc.

단, 사용기간 및 용량, 제작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해외이주로 인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합니다.

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합니다.

이때 출국일이라 함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 중 일부가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 당해 가족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운중(031-872-6116)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협의회 제3대 회장 취임

신임 하재인 회장 프로필

- ▶충남 공주 출생
▶76년 농협 입사
▶포천농협·일동농협·소흘농협 29년 근무
▶포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포천시초중고운영위원회의 회장
▶경기도교육청 중등학교 학교평가위원
▶포천신문 자문위원

하재인 회장 취임사

꽃이 피고 새싹이 돌아오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더욱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 사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송순석 회장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범죄예방 위원회 포천시지구회를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송 회장의 큰 업적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형사정책의 추세가 보호·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범죄예방 위원회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범죄예방위원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60여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범죄 없는 밝은 포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화합과 단결로 더 많은 지역 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지역에서 존경받는 범죄예방 위원회 성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 포천시지구의 조직표

